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76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조승래・김성회・채현일
김영환・염태영・이주희
박상혁・안도걸・김영진
김용만・박성준・맹성규
김 윤・서미화・박용갑
노종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탄력적 근무제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